



## DeCSS 소프트웨어의 공개에 따른 CSS 소프트웨어의 영업비밀성 관련 예비적 금지명령 결정에 대한 항소심 사건

38

DVD Copy Association Inc., Bunner, 10 Cal.Rptr.3d 185

###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미연방 제6순회 항소법원	사건번호	No.H021153
판결 일자	2004. 02. 27.	판결 결과	과기 환송
원고 (피항소인)	디비디 카피 컨트롤 어소시에이션(DVD Copy Control Association, Inc.)		
피고 (항소인)	앤드류 번너(Andrew Bunner)		
참조 법령	캘리포니아 통일영업비밀법 <sup>1)</sup> Civ.Code, § 3426 et seq		
참조 판례	Hunt v. Superior Court (1999) 21 Cal.4th 984, 999 [90 Cal.Rptr.2d 236, 987 P.2d 705], Whyte v. Schlage Lock Co. (2002) 101 Cal.App.4th 1443, 1449-1450, 125 Cal.Rptr.2d 277, Kewanee Oil Co. v. Bicron Corp., supra, 416 U.S. at p. 475, 94 S.Ct. 1879, Madsen v. Women's Health Center, Inc. (1994) 512 U.S. 753, 765, 114 S.Ct. 2516, 129 L.Ed.2d 593		
영업비밀	DVD 복제방지 프로그램(CSS)		
키워드 (Keyword)	영업비밀, 예비적 금지명령, 승소 가능성, 회복 불가능한 손해		

### 02 사건 개요

원고 회사는 DVD 복제방지 프로그램(CSS)를 영화 업계에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CSS를 역설계하여 영업비밀정보가 포함된 “DeCSS”라는 프로그램이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배포되었다.

1) <http://www.leginfo.ca.gov/cgi-bin/displaycode?file=3426-3426.11&group=03001-04000&section=civ>

---

원고는 피고가 DeCSS 링크를 본인의 웹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자신의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따른 소송제기로 예비적 금지명령이 내려졌다. 피고는 이에 항소하며, 예비적 금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 03 주요 쟁점

원 고	⇨	⇦	피 고
정보가 인터넷에 게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영업비밀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보가 공공의 지식이 된 상태에서는 영업비밀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예비적 금지명령과 맞지 않는다.
CSS를 더 이상 영업비밀로 보호할 수 없게 되는 것과 무허가 DVD복제를 방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은 회복불가능한 손해이다.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던 시점에 공연히 알려져 있었다면 DVD CCA는 임시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어, 해당 명령의 요건에 맞지 않는다.
DeCSS가 역설계를 통해 획득된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기 때문에 부적절한 수단으로 획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DeCSS가 부적절한 수단으로 생산되었다는 증거가 없어, 본안의 승소가능성이 희박하다.

---

### 04 판결 요지

---

예비적 금지명령을 판단함에 있어 법원은 '본안에서의 승소가능성'과 '금지명령의 승인 혹은 거절로 인해 당사자가 입을 상대적 손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원고는 유효한 예비적 금지명령을 위해서는 '영업비밀'과 관련한 '본안에서의 승소가능성'과 '자신의 상대적 손해가 더 크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

---

‘본안에서의 승소가능성’에 대하여, ① 예비적 금지명령의 거절과 잘못을 한 자에 대한 처벌은 별개의 판단이나, ② 원고가 주장하는 ‘부적절한 수단’에 의해 생산되었다는 증거가 희박하며, ③ 설령 부적절한 수단에 의해 획득되었다는 가정이 있더라도, 비윤리적인 기원을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그것을 게시함으로써 영업비밀 하에서의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

‘입게 될 임시적(Interim) 손해’에 관하여, ① 공개를 금지하는 예비적 금지명령은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정보가 이미 공공의 지식이 된 상태에서 정보의 공개를 금지할 정당성은 없으며, ② 금지하고자 하는 CSS의 공개가 해당 프로그램의 합법적인 공개보다 더 큰 손해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

---

종합하면 CSS는 영업비밀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예비적 금지명령은 원고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서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므로 피고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불법적인 제한이며, 원심 법원의 재량권 남용이 있다. 따라서 예비적 금지명령을 파기한다.

---

## 05 Key Point

---

공개를 금지하는 예비적 금지명령은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더 이상 비밀로 기능하지 않는 정보의 사용을 금하는 명령은 정당성이 없고, 이 사례에서와 같이 영업비밀 보호가 지나칠 경우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원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

---

예비적 금지명령이 유효하게 내려지기 위해서는 ‘본안에서의 승소가능성’과 ‘승인 혹은 거절을 통한 임시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영업비밀의 성립가능성과 함께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